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연장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0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연장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6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연장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u>180일</u> 이상일 것	_____

	-----.

	-----.
2. ~ 6. (생략)	1 _____.
② (생략)	_____

	<u>12개월</u>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여서도 채울 수 있는 기준이므로 180일의 요건만 채우고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연장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은 근로유인을 높이며 장기고용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구직급여 지급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와 같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비자발

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고용보험 최초 도입 시에는 구직급여 기여 요건이 18개월간 12개월이었으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요건이 완화되어 현행과 같이 18개월간 180일로 규정된 바 있음.

고용노동부는 수급요건 설정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과 실직 중 생계보장 등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적절한 구직활동 없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